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62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11.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8.02.

직진남

정 보 공 개 서

[㈜쉐프군단]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쉐프군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주소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77번길 36		
대표번호	031-643-5554	팩스번호	050-4147-0545
홈페이지	-	이메일	yom05693@hanmail.net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쉐프군단	직진남 외 2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장감로77번길 36, 1층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 3. 14.	2023. 03. 20.	원종민	031-643-5554	050-4147-0545
	법인등록번호	134411-0115899	사업자등록번호	423-87-0285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대표이사	원종민	직진남 외 2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장감로77번길 36, 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원종민	031-643-5554	032-858-67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염동석	직진남 외 2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장감로77번길 36, 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원종민	031-643-5554	032-858-6739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이제중	직진남 외 2개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장감로77번길 36, 1층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원종민	031-643-5554	032-858-673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내용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염지푸드	딜리버리염지	2023.04.1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장감로77번길 36, 1층	원종민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한옥집	미리네 삼겹상회	2023.08.18	경기도 부천시 양지로67번길 14, 1층 101호(범박동)	이제중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염지푸드	직진남	2023.11.07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을 장감로77번길 36	원종민

* [미리네삼겹상회]는 2024.2.19.에 [막퍼주는삼겹상회]로 영업표지가 변경등록 되었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직진남]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직진남	-
상 호	직진남 OO점	-
서비스표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34,700	11,777	22,923	289,945	10,858	12,923

자세한 재무상황은 별지1 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원종민	대표이사/ 사내이사	2023. 3 ~ 현재	(주)쉐프군단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2013. 9 ~ 2023. 1	엄지푸드 대표	회사 업무 총괄
			2023. 1 ~ 현재	엄지푸드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염동석	사내이사	2023. 03 ~ 현재	(주)쉐프군단 사내이사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이제중	사내이사	2023. 03 ~ 현재	(주)쉐프군단 사내이사	회사 업무 총괄
			2020. 4. ~ 현재	한옥집 대표	회사 업무 총괄
			2013. 1. 7~ 2016. 9. 22	고깃집 대표	회사 업무 총괄

* 2013년부터 2023년 1월까지 대표를 역임하였던 엄지푸드(사업자등록번호: 126-29-93476)와 2023년에 설립하여 영업하고 있는 엄지푸드(사업자등록번호: 434-03-02653)는 상호명은 동일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가 다른 사업장입니다.

* [미리네삼겹상회]는 2024.2.19.에 [막퍼주는삼겹상회]로 영업표지가 변경등록 되었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대표	원종민	가맹사업 경영	2022.8.~ 2023.01	엄지푸드(사업자등록번호: 126-29-93476)에서 딜리버리엄지(등록번호: 20220716)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 2023년 4월 (주)쉐프군단으로 양수되었음	
가맹본부	(주)쉐프군단	가맹사업 경영	2023.4.~ 현재	딜리버리엄지(등록번호: 20220716)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쉐프군단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준비 중	미리네 삼겹상회(등록번호: 20231102)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준비 중	

* [딜리버리엄지]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엄지푸드(사업자등록번호: 126-29-93476)에서 원종민 대표가 경영하였으며, 2023년 4월에 (주)쉐프군단에 양수되었습니다.

* [미리네삼겹상회]는 2024.2.19.에 [막퍼주는삼겹상회]로 영업표지가 변경등록 되었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상표		-	-	-	-

- 당사의 상표는 출원 준비 중이며,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직진남] 가맹사업 현황

1. [직진남]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 준비 중

2. [직진남]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엄지푸드	직진남	원종민	가맹사업 준비중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77번길 36
(주)쉐프군단	직진남	원종민	가맹사업 준비중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77번길 36, 1층

3. [직진남] 업종

영업표지	업종	
직진남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외식	직화 찐꾸미 볶음류, 제육볶음 등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직진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직진남]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	-	-	-	-	-
2022년	-	-	-	-	-	-
2023년	-	-	-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직진남]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직진남]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대표	원종민	딜리버리엄지	20214267	기타외식	0/1	2/0	0/0
가맹본부	(주)쉐프군단	딜리버리엄지	20214267	기타외식	0/1	2/0	0/0
가맹본부	(주)쉐프군단	미리네 삼겹상회	20231102	한식	0/0	0/0	0/0

* [딜리버리엄지]는 2023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엄지푸드(사업자등록번호: 126-29-93476)에서 원종민 대표가 경영하였으며, 2023년 4월에 (주)쉐프군단에 양수되었습니다.

* [미리네삼겹상회]는 2024.2.19.에 [막퍼주는삼겹상회]로 영업표지가 변경등록 되었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직진남]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직진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직진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직진남]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2023년]에 [직진남]외 2개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5,462			
광고	소계		5,462			
	인터넷					
	기타					
판촉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사업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해 가맹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12. 가맹사업보증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가맹사업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직진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6,600]				
가입비	3,300	계약체결 시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대가 -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대가
교육비	3,3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진행시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2,000]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금 미지급, 물류비 미결제 등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8,600]
가맹비	3,300
교육비	3,300
보증금(부가세 없음)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70,400	7,040			홀매장 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미지정)	22,000	2,200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약 33㎡ 기준 (약 10평)
간판 등	협력업체 (미지정)	4,400	440	별도협의	공사 전 계약취소	변동될 수 있음
설비 및 집기	별첨2 참조	33,000	3,300	별도협의	협력업체 주문 전	매장에 따라 다름
초도물품	별첨3 참조	11,000	1,100	별도협의	협력업체 주문 전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철거, 증설, 소방, 냉난방, 수도배관, 음향, 외부테라스, 각종 가구류, 간판, 화장실, 정화조, 도시가스, 온수기, 파사드 제외 등 견적 외 품목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감리 대가로 **도면제공비 금오백오십만원(₩5,500,000/부가세포함), 디자인검수비 3.3㎡당 금 금삼십삼만원 33만원(부가세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통행인의 수, 교통량, 시장특성, 통행인의 구매습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별 특성 등 가맹희망자의 점포선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 점포선정에 따른 최종 결정은 가맹희망자가 하며 선정 후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해당사항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가능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직진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또는 산정기준	지급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총매출액 ¹⁾ 의 2.2%	매월 15일	후불로 반환 안됨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가맹본부	별도협의	시행 전 별도 개별 통지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가맹본부	별도협의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운영업체	별도협의	별도협의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시행업체 (미지정)	실비	주문 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점포환경 개선비용	시행업체 (미지정)	가맹본부 부담금 제 외한 금액	개별 청구	시행 이후 반환되지 않음	VII. 1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20%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1) "총매출액"이라 함은 가맹점에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결제한 상품 판매 금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이 때, 소비자가 결제한 상품 가격에는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배달 대행 수수료, 카드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 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물품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 1회	문의 : 가맹본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기간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 계약기간에 한 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보증금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분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가맹비	없음(양도인의 잔여기간 인정)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을은 원활한 양도 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교육비	3,300	
보증금	2,000(부가세없음)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직진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순번	품목(단위:1ea)	공급단가		구분
		상한	하한	
1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직진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직진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가 [직진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4]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공급품목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사업자				
미성년자	주류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4] 판매상품리스트 참조	[별첨4] 판매상품리스트 참조	변동 시 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직화쭈꾸미류, 제육볶음 등 [직진남]과 동일한 메뉴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종	직진남	딜리버리엄지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km (단,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설정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공항, 호텔, 대학, 기차역, 지하철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6차선(그 이외지역은 4차선)이상의 도로의 건너편 등에 상응하여 높은 집객력이 확보되어 있고 외부와 단절되어 특정 공간 안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별도의 독립상권은 "특수상권"으로서,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영업지역과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업종이 아닌 영업표시를 가진 가맹사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직진남'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직진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직진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D-180 ~ D-90

예→②, 아니오→⑦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물품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2항 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2항 각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3조 2항 각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기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33조 2항 각호
○ [직진남]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3조 2항 각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3조 2항 각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계약 해지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로열티 등의 정기납입경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제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2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제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은 후 1개월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제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직진남]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제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제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제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계약존속기간 동안 경업을 하는 경우	제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의 양도 및 가맹점을 위탁경영 하게 한 경우	제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5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4조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4조2항 각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4조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4조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4조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4조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4조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4조2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4조2항 각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당사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교육비, 보증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여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직진남]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당사가 제공하는 원부자재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판매를 하는 영업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당사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직진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24시간	연중무휴, 연속 2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7일 전 서면으로 사전승인 득한 후 휴업 가능)	문의: 당사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특별한 제한 없음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본사 관리부	본사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공지함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완료	수시	본사 관리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수시	본사 관리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직진남]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가맹지역본부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광고	별도 협의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주들의 행사 동의 → 행사 시작 (단, 광고 성격상 분담비율을 조정하여야 함) 상당할 경우 조정 가능함)	- 대중매체 광고 -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 의 5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브랜드 및 상품광고+가맹 점모집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통상적인 전체 행사	별도 협의		행사 계획 공고→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사 시작	- 월별판촉행사 - 전체 가맹점사업자 의 7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기타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상동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가 승인한 시안 및 운영규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39조 (손해배상)

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이 제32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 및 담보제공 하거나 위탁경영하게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이 계약해지·종료 시 제35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금삼십만원(₩300,000)**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이 제36조를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하거나 경업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을"이 제37조를 위반하여 "갑"이 지정한 필수품목 등을 자점매입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을"이 제28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이 지정한 판매방식이나 유통채널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을"의 귀책사유로 본 가맹계약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1일당 금오만원(₩50,000)×잔여계약기간일수** 만큼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⑨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⑩ "갑"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⑪ 을이 판매 매출액의 허위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로열티를 불완전이행한 경우, 허위 또는 누락 매출액에 해당 되는 로열티 금액의 10배를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위약벌로 기존 미이행된 로열티 지급의 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제40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 반환 조건)

- ① 가맹점 오픈 후 최초 계약기간 내에 해지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 받은 가맹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 1. 가맹비는 "을"이 [직진남]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가맹사업 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2. 로열티는 "을"이 "갑"의 가맹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갑"이 제공하는 가맹점운영권을 지속하기 위하여 매 월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후불제 정기지급금으로서 반환되지 않는다.
 - ②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반환되는 금전에 대하여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지급된 금전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반환 범위가 변경 될 수 있다.
 - ③ "갑"은 제39조의 위약벌 규정과는 별도로 "을"의 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최초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동안 "갑"이 지원한 금액과 잔여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갑"의 수익("갑"의 기대수익, 로열티 또는 기타 정기납입금의 미지급분 등), 그리고 해당 지역에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추가 비용 등이 손해배상금으로 청구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p.11~p.12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 ~ 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 ~ 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체결	D-29(1일)	p.11~p.12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 ~ 25(3일)	p.12 참조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 ~ 5(3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 ~ 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새롭게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 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 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 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 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 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 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 를 설명	협의하여 부담	문의 : 당사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 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당사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직진남]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직진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최초교육		매뉴얼 교육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운영 교육	실무교육	매뉴얼 변경 등	실습교육	교육실시 시 안내	사유 발생 시
	연수교육	영업방침 변경 등	온라인 및 집단강의	교육실시 시 안내	사유 발생 시
특별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계약위반 재발방지 교육) 등	개별교육	교육실시 시 안내	사유 발생 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직진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최초교육		3일	3,300	필수 교육
운영 교육	실무교육	별도협의	실비	사유 발생 시
	연수교육	별도협의	실비	사유 발생 시
특별교육		별도협의	실비	사유 발생 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 이수시까지 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1]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설비 및 집기 리스트

설비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집기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3] 원부자료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4] 판매상품리스트

종류	메뉴	가격	
고기만(반찬X)	직화 찰국미(250g) 고기만(반찬X)	1인분	11,800원
1인메뉴	직화찰국미350g 1인 세트	18,000원	
	찰국미300g 삼겹120g 1인세트	19,000원	
	찰국미300g 우삼겹120g 1인세트	18,500원	
	찰국미300g 새우120 1인세트	18,500원	
	찰국미300g 제육120g	18,000원	
	직화제육300g 1인세트	17,000원	
	김치150g 제육200g 1인세트	18,000원	
	새우튀김	6,000원	
세트메뉴	직화찰국미볶음+새우튀김(4pc)	2인분	29,000원
		3인분	40,500원
	직화찰국미보쌈(220g)	2인분	29,500원
		3인분	41,000원
볶음메뉴	직화찰국미볶음	2인 500g	28,000원
		3인 1kg	40,000원
	직화쭈삼볶음	2인 500g	28,500원
		3인 1kg	40,500원
	직화 찰국미 우삼겹 볶음	2인 500g	29,000원
		3인 1kg	41,000원
	직화 쭈새 볶음	2인 600g	28,500원
		3인 1.2kg	40,500원
	직화 제육 볶음	2인 600g	27,000원
		3인 1.2kg	39,000원
	직화 김치 제육볶음	2인 600g	28,000원
		3인 1.2kg	40,000원
사이드메뉴	참치마요 주먹밥	4,000원	
	날치알 주먹밥	4,000원	
	새우튀김 5pc	6,000원	
	계란찜 추가	3,000원	
	공기밥 추가	1개 1,000원	
	콘샐러드 추가	1,000원	
	마요네즈	500원	
	쌈무 추가	500원	
	콩나물 추가	500원	
	고기왕만두	3pcs	4,000원
		6pcs	7,000원
	김치왕만두	3pcs	4,000원
		6pcs	7,000원
	갈비만두	3pcs	4,000원
		6pcs	7,000원
	고기반김치반반만두	6pcs	7,000원
	계란후라이 치킨까스	1장	5,000원
		2장	8,500원
	고구마치즈 돈까스100g	1장	5,000원
		2장	8,500원
	등심 돈까스150g	1장	5,000원
		2장	8,500원
	두툼한떡갈비 100g	1장	4,500원
		2장	7,000원
음료	코카콜라 500ml	2,000원	
	제로콜라 500ml	2,000원	